

문서번호	안전감사팀-6
보존기간	3년
결재일자	2026.01.05.
공개구분	공개

★차장	안전감사 팀장	본부장	사장	결 재
			01/05	
협 조				

고객과 함께하는 **스마일(Smile)** 공기업

2026년 감사방향 및 감사운영 계획



2026년 감사방향 및 감사운영 계획

- 정기적 자체감사를 통한 실체적 업무방향 제시 및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
- 업무전반의 문제점 사전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부서 운영효율 극대화

I. 관련 법령 및 감사 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(감사계획의 수립)
- 「문경관광공사 감사규정」 제11조(감사계획서 제출)

II. 감사개요

감사 목적

- 체계적인 자체감사 활동을 추진하여 부패, 비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기관과 직원을 보호해 신뢰받는 공기업 이미지 확립
-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및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바탕으로 경영 효율화

감사 방향

- 연간감사계획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사 업무 수행
- 지속적, 정기적인 감사 실시로 부서 및 직원 업무 역량 강화
- 복무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체계 마련으로 감사업무 내실화
- 시기별·취약요인별 체계적인 복무기강 확립
- 취약분야 특별감사, 예방적 일상감사 및 기강감사 확대 실시

감사 중점

- 예산집행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 발굴·개선
-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분석 및 방안제시
- 초과근무 및 관내출장 등 복무관련 수시 점검
- 복무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
- 동일 유형의 반복 지적사례 개선 여부

Ⅲ. 감사세부계획

정기감사

주요 내용

- 감사대상사무 전반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
(감사계획에 의하여 격년(시 종합감사 다음연도)으로 실시)
- 감사대상 : 공사 전 사업장
- 감사주기 : 2년
- 관련규정 : 문경관광공사 감사규정 제4조(감사의 구분) 2항
 -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격년(시 종합감사 다음연도) 주기로 실시하며, 당해연도 신설부서는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.
- 대상사업별 일정
 - 2025년도 정기감사 시행으로 2026년 문경시 종합감사로 실시함.

특별감사

주요 내용

- 특정한 업무·사업·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감사
-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수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비리 사전 예방

- 감사대상 : 공사 전 사업장
- 감사시기 : 연중 수시
- 감사실시 : 공사 감사규정 제4조 제3항
 -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사장의 지시 및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
- 감사중점
 - 특정 비위사실 및 현안문제 발생 시 집중감사
 -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
 - 고객 불편과 직결되는 각종 근무태만 행위
 - 불친절행위, 고객 불편사항 방치 행위 및 제도 개선사항
 - 고객의 민원(진정, 탄원) 및 제보사항
 - 시설물 유지관리의 합리성 및 적정성, 서비스 개선노력

기강감사

주요 내용

- 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, 근무실태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
- 감사대상 : 공사 전 사업장
- 감사시기 : 연중 수시
- 감사실시 : 공사 감사규정 제4조 제4항
 - 소속직원의 비위사실, 부조리 또는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점 검 반 : 안전감사팀장 외 담당 직원 등
- 감사중점
 -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위반사항
 -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
 - 금품수수, 향응접대, 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정행위

- 복무기강 실태 점검
 - 출퇴근 시간 준수, 무단이석,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
 - 출입문 잠금장치 등 보안관리 실태
 - 기타 복무 관련사항 및 공사규정 준수여부
- 시설물 관리상태 및 안전사고 예방 실태 점검
 - 사업장 내·외 정리정돈 및 주변 청소상태 등 고객 불편사항
 -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실태
- 성수기 및 명절, 연말연시 등 근무기강 확립 시기 집중감사

일상감사

주요 내용

○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감사로 원가계산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타상성을 심사,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행정운영의 시행착오를 사전예방함

- 감사대상 : 공사 전 사업장
- 시행기준 :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상감사 요청 및 시행
- 관련근거 : 감사원 일상감사 가이드라인
- 추진방향 : 일상감사 세부 시행계획 수립
- 시행방법
 - ☑ 집행부서 :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일상 감사 실시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(최소 7일전)을 고려하여 최종 결재권자 결재를 득하기 전 일상감사 요청
 - ☑ 감사부서 : 일상감사 의견 제시 시 위법, 부당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 대안 또는 시정 방안 제시
- 일상감사 절차
 - ☑ 일상감사 의뢰(집행부서) → 일상감사 실시 및 의견통보(안전감사팀) → 일상감사 의견 이행(집행부서) → 이행실태 사후관리(안전감사팀)

IV. 감사결과 조치 및 활용

감사처분의 공정성 확보

☒ 처리기준

- 「인사규정 시행내규」의 “징계양정기준” 엄중 적용
- 다수인이 연루된 경우에는 「인사규정 시행내규」(별표9)의 “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”에 따라 처분
- 중대한 하자 발생, 무사안일·업무태만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 조치
- 적극적인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업무 실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문책 등 관용조치로 업무 효율화
- 부정적 고의성이 내포된 행위는 가중 문책
- 공사 근무 및 복무규정 제10조, 제11조 위반 시 무관용원칙 적용
- 매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동일사례는 담당·팀장 엄중조치

감사결과 활용

-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전직원 공유를 통해 해당 행위 재발방지
- 감사 결과 분석 자료를 통한 2027년도 감사계획에 반영
- 자체감사 시 발굴 또는 상급기관(문경시청 등)의 감사결과 통보된 모범사례는 포상에 적극 반영

V.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

- 감사업무 벤치마킹 및 사전 준비
 - － 감사 실시 및 처리요령에 대한 市 감사실 업무협조
 - － 타 공사·공단 감사팀 운영체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벤치마킹
- 감사 결과 조치요구 후 집행여부 확인 : 2개월 이내
 - － 재정적 조치(회수, 추징, 변상 등) 및 시정사항 등

- 2026년도 감사계획 및 2025년도 감사결과 공개
 - 내부망(전자결재시스템) : 감사계획, 감사결과 등 감사 전반사항
 - 경영공시(클린아이) : 내·외부 감사결과, 지적 및 조치사항 등
- 내·외부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 및 법규 숙지하여 소관 업무 및 시설관리 철저. 끝.